

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시	처리일	처리기간
				7 일
승계를 하는 자	성명(법인의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)		법인등록번호	
			생년월일 ※ 법인은 기재 생략	
	주소(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)		전화번호	
승계를 받는 자	성명(법인의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)		법인등록번호	
			생년월일 ※ 법인은 기재 생략	
	주소(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)		전화번호	
사업장	명칭 (상호)	변경 전	변경 후	
	주소			
승계사유	☐ 상속 ☐ 양도·양수 ☐ 합병			

「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자 지위승계를 신고합니다.

이름: 나이: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
·시장·군수·구청장

귀하

신고인 첨부서류	- 상속·양도 등을 한 자의 등록증 - 상속의 경우: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(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만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) - 영업양도의 경우: 다음 각 목의 서류 - 양도·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-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나 「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(양도인이 방문하여 본인확인을 하는 경우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) - 합병의 경우: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-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(「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7조제1항제1호의 경우로 한정합니다) -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·초본) - 토지 등기사항증명서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신고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신고인 신고서 작성 → 접수 →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→ 결재 → 등록증 발급
(기존 등록증 폐기)

처리기관: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